

국방·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44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10.

발의자 : 권은희 · 김경진 · 김동철

박주선 · 박지원 · 송기석

장병완 · 장정숙 · 천정배

최경환(국)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국방·군사시설이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국방·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세입이 부족하여 이 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방·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, 국방·군사시설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방 ·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방 ·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약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3. (생 약)</u></p>	<p>제4조(세입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의 전입금</u></p> <p><u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u></p>